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거 대상 물건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의 2)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4. 근거법규: [붙임 2]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 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관광과))

2) 팩스번호: 052)209-3489

3) 전자우편(E-mail): loveyu07@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과(전화: 052)209-35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1】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백사장”을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행위로서 백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과태료”로 한다.

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구청장은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레저용품, 그 밖의 개인용품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10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백사장</u> 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2. <u>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행위로서 백사장</u> ----- --
3. <u>제2호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별표 2와 같다.</u>	<u><삭 제></u>
<u><신 설></u>	<u>②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u>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u>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u>	③ ----- ----- <u>어느 하나</u> <u>를 위반하여 과태료</u> ----- ----- ----- ----- ----- -----.
<u><신 설></u>	<u>제10조의2(설치·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 구청장은 무단으로 설치</u>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레저용품, 그 밖의 개인용품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 2】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설치·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법제23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야영용품
2. 취사용품

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본조 신설 2023. 6. 27.)